

예산총칙

2019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01,951,000	27,058,530
일반회계	768,740,000	23,062,200
특별회계	133,211,000	3,996,330
공기업특별회계	86,762,000	2,602,860
상수도사업	34,811,000	1,044,330
하수도사업	46,083,000	1,382,490
대전해수욕장개발사업	5,868,000	176,040
기타특별회계	46,449,000	1,393,470
의료보호기금사업	2,448,000	73,440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2,908,000	87,24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6,185,000	785,55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3,127,000	93,810
주택사업	325,000	9,75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05,000	3,150
주차장설치사업	1,416,000	42,480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1,150,000	34,500
보령담주변지역지원사업	946,000	28,380
학교급식지원센터	7,839,000	235,17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4,106,176천원 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경비는 이용할 수 있다.

- ①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 ② 지방채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